###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



## 여 수 시 보

시정지표

1. 시민공감 감동시정 1. 균형있는 상생경제 1. 사람중심 나눔복지 1. 품격있는 문화관광 1. 살기좋은 정주환경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목 차

【고	시	]
----	---	---

- ○여수시 고시 제2018-386호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3 ○여수시 고시 제2018-399호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4
- ○여수시 고시 제2018-400호 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5
- ○여수시 고시 제2018-403호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주차장)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6
- $\bigcirc$  여수시 고시 제2018-404호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7
- ○여수시 고시 제2018-405호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9
- ○여수시 고시 제2018-406호 소규모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10
- 여수시 고시 제2018-410호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11 규약 고시

####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18-2772호 여수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16
- 여수시 공고 제2018-2810호 2019년 공공산림가꾸기(숲가꾸기자원조사단) 모집 재공고 /17
- 여수시 공고 제2018-2819호 2017년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자료 미 제출업체 /22 시정명령 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18-2820호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 ○여수시 공고 제2018-2831호 2018년도 제5회 여수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40 시행계획 공고

회				
람				

여수시 고시 제2018-386호

###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12.

여 수 시 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여수시 종화동 922-1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명 칭: 자산교 재가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가. 면 적: 1,047㎡

나. 규 모: L=40m, B=8~10.9m(교량 L=40m, B=10.9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여수시장

나. 주 소: 여수시 시청로 1(학동)

5. 사업시행기간(변경): -기정: 2017.12.14.~2018.12.31.

└변경: 2017.12.14.~2019.12.31.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 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게재생략
-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해당없음
-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 061-659-4013), 교통과(☎061-659-4149)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여수시 고시 제2018-399호

###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및「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10

2018.12.

여 수 시 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여수시 만흥동 산271-11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사업

나. 명 칭: 옛 철길 연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1,575㎡(도로 481.1, 공원 1,039.9)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여수시장

나. 주 소: 여수시 시청로 1(학동)

5. 사업시행기간(변경): -기정: 2018. 8. 2.~2018.12.31.

└변경: 2018. 8. 2.~2019.12.31.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 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게재생략
-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해당없음
-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 061-659-4013), 도로과(☎061-659-45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고시 제2018-400호

### 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신청 건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9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전라남도 사무위임 규칙」제2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고시합니다.

2018.12.

여 수 시 장

-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에듀파크부지 조성사업
- 2. 사업시행자 성명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여수시장

나. 주 소: 여수시 시청로 1(학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도서관 및 어르신체육관 건립

나. 사업의 개요: 이순신도서관 및 어르신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여수시 웅천동 1820-2번지 일원

나. 면 적: 11,626㎡

5. 사업시행기간(변경): \_ 당초: 2017.12. 7. ~ 2018.12.31.

└ 변경: 2017.12. 7. ~ 2019.12.31.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게재생략
- 7.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게재생략
- 8. 국. 공유지 관리처분계획(변경없음): 해당없음
- 9. 사업시행지역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변경없음): 해당없음
-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659-4012) 및 시립도서관(061-659-4780)으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여수시 고시 제2018-403호

###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주차장)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주차장)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32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고시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2018.12.27.

## 여 수 시 장 (인)

1.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주차장)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승인조서

####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비고
1 1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0	(m)	/ T 省	ÖŤ	형태	경과지	시 결정일 '	
기정	소로	2	850	8	국지 도로	96	소2-832 신기동 112-1대	소2-833 신기동 112-8대	일반 도로		전고-9호 92.01.25	
변경	소로	2	850	8	국지 도로	106	소2-832 신기동 112-1대	소2-849 신기동 112-14대	일반 도로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변경	소로 2-850	소로 2-850	- 소로 2-850 선형 변경 : 기정 L=96m, B=8m : 변경 L=106m, B=8m, 증 10m	주차장 54 및 55의 변경에 따른 주민 교통편의 도모를 위한 우회도로 계획

####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²)		최초	비고
下七	도 단표시 민호	시설병	カヘ	기정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54	노외주차장	신기동 112-1번지 일원	782.6	증) 850.7	1,633.3	여고-85호 06.06.13	1.
폐지	55	노외주차장	신기동 113-15번지 일원	444.7	감) 444.7	-	여고-85호 06.06.13	2.

####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54	노외주차장	- 주차장 면적 변경 : 기정 782.6㎡ : 변경 1,633.3㎡, 증 850.7㎡	신기동 흥국상가 주변 상권 활성화 및 지역 주민 주차 편의 제공을 위한 주차장 확장
55	노외주차장	- 주차장 55(444.7㎡) 폐지	주차장 54로의 합병으로 인한 주차장 폐지

- 2.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주차장)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게재 생략
- 3. 관계 도서는 여수시청 도시계획과(061-659-401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32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고시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12.27.

## 여 수 시 장 (인)

- 1.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승인조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최초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능	(m)	기점	종점	형태	결정일	비고
기정	소로	3	174	6	국지 도로	36	중2-1 문수동 796-2전	소3-173 문수동 산138-10임	일반 도로	여고-33호 '95.06.22	
변경	소로	2	1465	8	국지 도로	43			일반 도로		
기정	중로	3	126	12	국지 도로	162	대3-1 관문동 433도	소2-493 관문동 230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495	8	국지 도로	390	소2-493 관문동 515답	소1-44 종화동 891도	일반 도로	여고-274호 '17.09.28	
변경	중로	3	126	12	국지 도로	532	대3-1 관문동 433도	소1-① 종화동 932도	일반 도로		
신설	소로	1	407	10.8	국지 도로	20	중3-126 종화동 932도	소1-44 종화동 891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1231	8	국지 도로	29	소2-495 종화동 1083-1대	학교26 종화동 943학	일반 도로		
변경	소로	2	1231	8	국지 도로	25	소2-495 종화동 1077-13도	학교26 종화동 943학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300	대3-17 오천동 185도	오천동 186도	일반 도로		
변경	소로	1	1	10	국지 도로	297	대3-17 오천동 185도	오천동 186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10	10	국지 도로	155	중2-34 오천동 341-7도	소2-2 오천동360-2전	일반 도로	여고-33호 '95.06.22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78	오천동 381-4대	소1-10 오천동 360-2전	일반 도로	여고-33호 '95.06.22	
기정	소로	2	68	8	국지 도로	258	중2-34 오천동 107대	소2-2 오천동 381-1대	일반 도로	여고-33호 '95.06.22	
변경	소로	1	10	8~10	국지 도로	645	대3-17 오천동 181도	중2-34 오천동 107대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1148	7	국지도 로	1,366	화정면 개도리 1765-1도	화정면 개도리 산591-3도	일반 도로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174호선	소로2-1465호선	• 선형변경 및 폭원확장 - B= 6m → 8m - L= 36m → 43m 증)7m	응천택지지구~문수주공 아파트간 도로개설을 통해 주민생활개선 및 교통편의 제공을 하기 위함
중로3-126호선 소로2-495호선	중로3-126호선	<ul> <li>도로 노선통합 및 노선연장</li> <li>확폭 개설하는 소로2-495호 선과 노선통합</li> <li>B= 12m</li> <li>L= 162m, 390m → 532m</li> </ul>	동문동 주민센터~자산교간의 협소한 도로확장을 통한 교통흐름제고 및 학생보행환경 개선으로 원도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
-	소로1-407호선	<ul> <li>도로신설</li> <li>당초 소로 2-495호서 종점부 (자산교가설구간)를 도로규모에 일치되게 조정</li> <li>B= 10.8m</li> <li>L= 20m</li> </ul>	중로 3-126호선 변경에 따라 도로위계에 일치되게 조정
소로2-1231호선	소로2-1231호선	• 기점부 연장단축 - L= 29m→25m 감)4m	접속도로 확폭에 따른 연장단축
소로1-1호선	소로1-1호선	• 기점부 연장단축 - L= 300m→297m 감)3m	기개설된 현황도로에 일치되도록 기점부 연장 단축
소로1-10호선 소로2-2호선 소로2-68호선	소로1-10호선	<ul> <li>노선통합 및 노선연장</li> <li>소로2-2호선, 소로2-68호선</li> <li>→ 소로1-10호선</li> <li>・소로 1-10호선 기점부 노선연장(증154m)</li> <li>・총연장: 645m</li> </ul>	오천동 주민생활도로 개설을 통한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교통편의 제공을 위함
-	소로 3-1148	• 도로(소로)신설 (B= 7m, L= 1,366m)	4차 도서종합개발사업계획 반영에 따른 기초생활기반 시설 확충 및 섬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과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도로를 신설 하고자 함

- 2.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게재 생략
- 3. 관계 도서는 여수시청 도시계획과(061-659-401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및「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12.

여 수 시 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여수시 국동 647-1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소로 2-334)

나. 명 칭: 국동1통 L마트~국동주유소 뒤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가. 사업규모: L=164m, B=8m

나. 사업면적: 1,662m²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여수시장

나. 주 소: 여수시 시청로 1(학동)

5. 사업시행기간(변경): -기정: 2017. 8.31.~2018.12.31.

└변경: 2017. 8.31.~2019.12.31.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 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게재생략
-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해당없음
-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 061-659-4013), 도로과(☎061-659-40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고시 제2018-406호

## 소규모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38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변경승인 연 월 일	매립면	허취득자	매립목적	면적	면허장소	공 사	기간	변경사유	매립예정지 토지이용
연 월 일 (승인일)	주 소	성 명	매입숙식	(m³)	- 번역생 <u>소</u>	당 초	변 경	변경사 m 	도시이용 계획
2018. 12.27. (2018-5)	여수시 시청로 1 (학동)	여수시장 (해양항만 레저과장)	호안정비 (연안정비 사업)	930.2	전라남도 여수시 우두리 697-108 지선	2017.5.10. ~ 2018.2.10	2017.5.10. ~ 2019.1.30.	공사기간 내에 준공하지 못하여 상실된 면허의 회복 및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실시계획 변경	호안도로

2018. 12. 27.

여 수 시 장

##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2018. 1. 31. 제정 2018. 5. 28. 개정 2018. 11. 14. 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협의회는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협의회는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관련 법률과 제도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 조정하고 의견교환을 통해 국가산업단지 지속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의 구성) ① 본 협의회의 회원구성은 전국 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한 전국의 지방정부 중 협의회 구성에 동의하여 제2항에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된 시.군. 구청의 현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② 향후 협의회의 회원구성에 있어 전국 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한 지방정부 중 협의회 구성에 동의한 지방정부가 추가적으로 있을 시 회의를 통하여 회원으로 위촉될 수 있으며, 회원은 지방정부의 현직 단체장으로 한다.

## 제 2 장 임원 및 운영

제4조(임원의 구성) 본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 상임위원 1인을 둔다.

제5조(임원의 선출) 회장과 부회장, 상임위원의 선출은 정기회의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6조(임무) ① 회장은 본 협의회를 대표하며 본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상임위원은 회장 및 부회장과 긴밀히 협력하여 상호간의 결속에 힘써야 한다.
- ④ 회원은 대외적으로 본 협의회의 명예와 권리를 선양하고, 회원 상호간의 신의를 지키며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 상임위원 임기는 각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사무소 및 사무처리) ① 협의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속한 지방정부 담당부서에 둔다.

- ② 사무소는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보관 및 관리하고, 차기 사무소에 정상적 상태로 자료를 이관해야 한다.
-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과 서기를 둔다.
- ④ 간사는 회장이 소속된 시·군·구청의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회장이 소속된 시.군.구 업무담당으로 한다.
- ⑤ 협의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 관리 한다.

제9조(자료제출 요구 등) 협의회에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지방정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개진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경비부담) ① 본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모든 회원 지방정부가 동일 비율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금액은 연 5백만원으로 한다.(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 ② 부담금은 각 회원 지방정부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세입 · 세출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③ 부담금은 제8조에 규정된 사무소 지정 은행계좌로 수납 · 관리하여야 한다.
- ④ 기타 부담금 운영에 대한 사항은 실무협의회 결정에 따른다.

## 제 3장 회 의(총회 및 실무협의회)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연 1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다만 회의 안건이 경미하 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서면 으로 갈음 할 수 있다.

- ② 협의회 총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임원의 선출, 협약의 개정, 신규 지방정부 가입여부 결정
  - 2. 안건의 실무협의회 위임 결정
  - 3. 실무협의회를 거쳐 회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처리
- ③ 지방정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부단체장이 대리로 참석 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가진다. 단, 단체장 및 부단체장모두 참석이 어려울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서를 위임받은 자가 총회에 제출한다. ④ 회의 진행을 위한 의사 및 의결 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12조(안건의 제출 및 회의결과 조치) ① 회장은 회의 개최 30일전까지 상정안건을 제출하도록 통보해야 하며, 회원 지방정부는 총회에 상정안건을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회의 개최 후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 지방정부에 통보해야 하며, 심의 및 결정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총회에서 보고해야 한다.

제13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실무검토와 총회결정 사항 및 위임받은 사항의 사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실무협의회 회장과 간사는 제8조 제3항에 따른 협의회 간사와 서기를 당연직으로 한다.
- ③ 실무협의회는 각 지방정부 업무담당 부서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담당주사가 대리 참석할 수 있다.
- ④ 실무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실무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지방정부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회의장소는 회장이 속한 지방정부나 실무협의회시 회의를 통해 별도장소에서도 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회는 상정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총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간사를 통하여 보고해야 한다.

제14조(협의사항 등) 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조정 또는 건의 등을 한다.

- 1. 국가산업단지 조성 유지·관리 등 관련 지방정부 업무 전반에 대한 협의
- 2. 국가산업단지 관련 지방정부 상호간 현안 등에 관한 의견교환 및 갈등 조정
- 3. 중앙부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본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의 건의
- 4. 국가산업단지 관련 지방자치행정 발전방안 공동 연구
- 5. 기타 본 회의 협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협의 및 조정) ① 지방정부 간 공동 현안은 실무협의회의 정기회의나 임시회의시 회원 상호간에 협의한다.

② 일부 지방정부 간에 국한된 현안은 관련 회원 상호간 협의를 거쳐 의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중재요청이 있을 경우 실무협의회에서 조정한다.

제16조(협의사항의 효력) ①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②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협의 ·조정된 사항은 성실히 이행한다.

##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회의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회칙의 개정은 회원의 제청에 의해 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제3조 본 회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통례에 따른다.

제4조 회칙시행에 관한 경과규정이 회칙에 의하여 협의회가 구성될 때까지의 합의사항 및 시행은 이를 인정한다.

[별표]

#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

지 역	지 방 자 치 단 체 명	비고
경 기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3
충 북	청주시	1
충 남	당진시, 서천군	2
전 북	군산시	1
전 남	여수시, 광양시, 영암군	3

### 여수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여수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2 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준공검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2.

여 수 시 장

- 1. 사업시행지 위치: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377-15번지
- 2. 사업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명 칭: 소라면 관기초등학교 앞 도로확장공사

3. 준공 면적 또는 규모

가. 면 적: 1,146㎡

나. 규 모: L=104.89m, B=12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여수시장

나. 주 소: 여수시 시청로 1(학동)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일

가. 착수년월일: 2017. 9.28.(실시계획인가고시일)

나. 공사완료일: 2018.11.14.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20061-659-4013), 도로과(20061-659-40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공공산림가꾸기(숲가꾸기자원조사단) 모집 재공고

여수시에서 2019년 공공산림가꾸기(숲가꾸기자원조사단)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 공고합니다.

2018. 12. .

## 여 수 시 장

- 1. 모집분야 및 근무기간
  - 가. 모집분야
    - ㅇ 숲가꾸기자원조사단 : 2명
  - 나. 근무기간
    - ㅇ 2019. 1. ~ 12. (예산범위 내)
- 2. 접수 및 선발
  - 가. 신청서 접수처
    - ㅇ 여수시 산림과(여수시 여천체육공원길 49, 망마경기장 1층)
  - **나. 접수기간** : 2018년 12월 27일~ 2018년 12월 31일(3일간)
  - 다. 신청서류
    - ㅇ 참여 신청서 : 별지1호
    - ㅇ 주민등록 등본 : 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 ㅇ 신청자 본인의 건강보험증 : 신청자 본인, 세대원의 직장 유무 및 소득판단 자료 등
    - ㅇ 구직등록증
    - ㅇ 기술교육 이수증, 자격증 사본, 해당분야 근무한 경력을 입증하는 증명(대상자에 한함)
  - **라. 선발통보**: 2018년 1월 4일(개별 유선통보)

- 3.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산림경영 기술자 기능2급 이상 또는 동등한 자격요건을 가진 자
  - 나. 산림관련 퇴직공무원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퇴직자
- 다. 산림조사 및 숲가꾸기 관련 업체 및 기관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또는 관련 용역수행에 참여 실적이 있는 자
  - 라. 산림관련 고교 · 대학(2년제 · 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졸업자

### 4. 신청자격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할 수 없음.

- 가. 산림에서 기계 장비를 사용하는 중노동임을 고려하여 작업도구 사용 등에 장애(청각·간질·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인
- 나.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한다.")재학생
  - \* 다만, 2019년 2월 고교·대학졸업 예정자('19년 하반기 졸업예정자는 하반기 참여 가능) 및 구직 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야간대학 재학생의 경우는 참여 가능
- 다. 전년도 사업 추진 과정시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업 참여를 배 제 받은 자
- 라.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 5. 대상자 선발기준

ㅇ 2019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 및 별도계획 수립

### 6. 사업추진 내용

가.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예정)

※ 기상 및 시행기관의 여건에 따라 사역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나. 사업장소 : 여수시 일원

다. 사업내용

○ 산림조사 및 산림정보 DB구축 등 관련 업무 수행

### 7. 임금 등 근로조건(2019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변동)

- 가. 인건비 등 지급(2018년 기준)
  - ㅇ 일반인부 : 60,240원/1일
  - 4대 보험(국민연금, 산재, 고용, 건강보험)가입
- ※ 관계법령에 의거 사용자가 의무가입조치 하며, 인건비에서 본임부담금을 공제한 후 지급 나. 근로조건
  - 근무시간: 1일 8시간(09:00~18:00), 주5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휴 일: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날(5월 1일)은 법정 휴일로 유급 처리함. 그 밖의 사항은 별도 계획에 의함

### 8. 기타사항

- 가. 사업장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 나. 산림분야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에는 사업 참여에 배제조치 합니다.
- 다. 본 공고 이 외의 사항은 「2019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릅니다.
- ※ <u>공고일 현재('18.12.27.) 2019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지침(산림청)이 미 고시</u> 상태이며, 12월 말 지침 고시 후 임금 및 기타사항에 관하여 별도 통지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산림과(전화: 061-659-4605)로 문의바랍니다.

(앞 면)

## 공공산림가꾸기사업(숲가꾸기자원조사단)참여 신청서

접수	번호									(신청	일자	: 201	8.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기재시 선택기입				<sup>找</sup> 기입
이메일주소						수신	동의	여부	동의	1(	) 미동	등의(	)	
핸드	포번호						수신	동의	여부	동의	1(	) 미동	등의(	)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기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ᅡ여자	동의	l (	) 미동	등의(	)			
	세대격	F (	겨부	① 해당	당 ② 해당없	성음	<b>세대원수</b> (세대주, 동거인제외)						명	
이 력	취 업	여	부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사 항	실 업	기	간	20	~20					-, 무직, 기타				.,
0	그밖의	의 공	경력											
전문	가인 경	우	자격	╡(	), 경력	(		), 기	타(		)	*상세	히기	술
참여	희망사	업	1					2						
구직등록여부 등록			등록	(	), 미등록 (	)								
과거 재정지원일지		וכ	참여/	사업명	1		2				3			
	시원일사 참여여	٠ ا	참 여	기간	20~2	20	20		.~20		20		.~20	
공무원 가족여부								* 가	족 중	에 공무	원()	기 있는	경우	기재

- ① 본 신청서는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 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2]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조회ㆍ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뒷면)
  -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 이익(\_\_\_\_\_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날인/서명)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10년
일 가 생 때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	참여자 선정종료시
건덕정독	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점역자 신경공묘자
=101=10b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취업취약 계층항목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중의글포구나 10년
- 1100 1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참여자 선정종료시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괴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 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 년 월 일

000기관장 귀하

# 「2017년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자료 미제출에 따른 시정명령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의거 2017년 전문건설업 실태조사자료 미제출에 따라 같은 법 제81조9호 규정에(시정명령 등)의거 시정명령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8년 12월 27일

## 여 수 시 장

- 1. 시정명령 대상 업체 : (주)중원씨엠에스
- 2. 시정명령일시 : 2018. 12 .27.
- 3. 시정명령 이행기간 : 2018. 12. 27. ~ 2019. 1. 10.
- 4. 법 적 근 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시정명령)제9호
- 5. 시정명령내용 : 건설산업기본법제 49조에 의거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7년 전문건설업자의 실태조사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시정명령 등)9호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하오니 2019.1. 10.일까지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고기간 내에 실태조사 자료 미 제출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5호 및 같은법 제83조8의2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대상임 알려드립니다.
-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도시계획과(☎061-659-4005)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7. 본 행정처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시정명령 등의 보고)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 정 명 령 대 상 업 체

연번	상 호	대표자	처분업종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근거
1	(주)중원씨엠에스	ㅣ 유저히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실태조사자료미제출	시정명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9호

## 공 고

『여수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 12. .

## 여 수 시 장

##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주요내용

- O 주차요금 등(안 제6조 제1항, 별표1 개정)
- 주차장 <u>이용률이 극히 저조</u>하거나, <u>특별관리</u>가 필요한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지정·고시를 통하여 <u>2시간 이내에 무료로 운영</u>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중식시간 12:00부터 14:00까지 무료이용 확대 운영
  - 노상주차장 30분 무료이용 적용 근거, 수익성 분석을 통하여 무료화 전환
  - O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안 제16조의2, 제1, 2,항 신설)
    - 법 제12조의3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 평가 대상사업 및 비대상 사업에 대하여 <u>부설주차장 면적을 뺀 나머지</u> 면적의 1.2% 이상의 노외주차장 조성 기준 신설
  - 거주자·사업자전용주차구획 설치운영(안 제13조 제3항, 별표6 개정)
    - <u>거주자·사업자 전용주차구역</u> 지정 운영에 있어 특별 관리가(해양공원, 고소동 벽화마을 등)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u>주차요금의 50% 범위에서</u>할인 또는 할증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안 제17조 제1항 별표10, 별표11 개정)
  - 숙박시설 중 <u>생활숙박시설</u>은 대형화 건축물로 주차 수요가 매우 높아 여 수시 경관·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화할 필요성 건의(도시계획과)
    - ⇒ 시설면적 120㎡당 1대 → 100㎡당 1대/호실 당 0.7대 중 큰 대수 적용
  - 영 제6조제1항 별표1의(부설주차장 설치기준) 해석에 대한 비고 적용
- 보조금의 지급 (안 제22조 제1항 1호 개정)
  - <u>여수시 공동주택 조례</u> 제2조 제1항 2호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복 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규정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 일원화 및 중복 지원 근거 삭제
- 2. 개정조례안 : 별첨
- 3. 입법예고 기간 : 2018. 12. 27. ~ 2019. 01. 15.(20일간)
- 4. 의견 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교통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061)659-4147)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사항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 의견 제출할 곳
    - 가. 주 소 : 우)59675 전남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나. 받는 사람 : 여수시장(참고 : 교통과장)
    - 다. 전화번호 : 061)659-4147, 팩스 061)659-5837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_ "	•		1 1 0			

○ 성명(단체명) :

○ 주 소:

○ 전 화 번 호 :

도레이 취묘법 III 0	찬성	여부	0177(110)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	반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 「여수시 주차장 조례」일부 개정(안)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① 법 제12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 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택지개발사업
- 2. 도시개발사업
- 3. 주택지조성사업
- 4. 도시재개발사업
- 5. 산업단지개발사업
-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때 설치하여야 할 노외주차장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도시교통 정비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 같은 법 제16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개선 필요 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전체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나머지면적. 다만, 그 면적은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1.2퍼센트 이상의 면적이어야하다.
-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1.2퍼센트 이상의 면적
- 제2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설치하거나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여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를 "설치하려는 자"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1. 별표6. 별표10 및 별표1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지조성사업의 노외주차장 면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단지조성사업의 승인·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항과 행정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접수된 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제3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행위 신청(부칙 조례 제1280호의 각호) 등을 한 경우 조례 제17조 제1항의 신설 규정은 그 신청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6조제1항 관련)

(노외주차장) (단위 : 원)

급지	자동차	사동차 최초1시간	최초 1시간 초과 시 10분마다	1일	월 정기주차권			
구분	구분	최소1시신		최대요금	주 간	야 간	주・야간	
1급지	소형	무료	200	5,000	60,000	50,000	100,000	
1日/1	대형 무료	300	8,000	90,000	75,000	155,000		
0ユフ)	소형	무료	100	3,500	40,000	30,000	60,000	
2급지	대형	무료	200	5,000	70,000	50,000	110,000	

- 1. 주차장의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거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지정 고시를 통하여 2시간 이내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 2.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12시부터 14시까지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 ※ 시설물 관리에 추가적 비용이 소요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시장이 따로 지정 고시한 주차장의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른 요금을 적용한다.

71571 7 H	10번미나	1일 최대요금		
자동차 구분	10분마다	월~금요일(공휴일 제외)	토.일 및 공휴일	
소 형	200원	5,000원	10,000원	
대 형	300원	8,000원	16,000원	

(노상주차장) (단위 : 원)

급지 구분	자동차 구분	최초30분 이내	30분 초과 시	1일 최대요금	월 정기주차권
1급지	소형	무료	30분마다 500	5,000	60.000
1月7	대형	무료	10분마다 300	8,000	해당없음
のユコ	소형	무료	10분마다 100	3,500	30.000
2급지	대형	무료	10분마다 200	5,000	해당없음

- ① 노상주차장의 경우 주차 시 1,000원을 징수한 후, 주차 완료 시 사용 시간에 따라 정산한다.
- ② 노상주차장 운영의 수익성 · 효율성을 분석하여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 [비 고]

1.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1급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지역, 나목의 상업지역 및 제5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에 시장이 1급지로 지정고시한 지역

나. 2급지 : 1급지 이외의 지역

2.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3월 ~ 10월 : 08:00~20:00

나. 11월 ~ 2월 : 08:00~19:00

3. 차량의 구분

가. 소형 :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자동차

나. 대형 : 소형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

### [별표 6]

## 거주자.사업자 전용주차구획 주차요금(제13조제3항 관련)

구 분	전 일 제	주 간 제	야 간 제
거 주 자	30,000/월	20,000/월	10,000/월
사업자 및 상근자	50,000/월	30,000/월	20,000/월

<sup>※</sup> 거주자·사업자 전용주차구획 지정 운영과 관련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여 고시한 지역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할 수 있다.

## <u>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u>(제17조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 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시설면적 180㎡당 1대(시설면적/180㎡)
2. 숙박시설	○ 시설면적 120㎡당 1대(시설면적/120㎡) ○ 생활숙박시설은 100㎡당 1대 또는 호실 당 0.7대 중 큰 대수 적용
3.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 및 「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 룸형 주택은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 피스텔	주택의 규모별 주차장 설치기준 (전용면적) 1/85 85㎡ 이하 1/85 85㎡ 초과 1/70 ○ 위 표에 따른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 또는 호실(업무시설 중 오 피스텔)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	○ 세대당 주차대수가 0.9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75대)이상
5.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비고 : 위 내용의 해석에 관해서는 영 제6조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따른다.

## [별표 11]

## 도서지역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7조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 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 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 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225㎡당 1대(시설면적/225㎡)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 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75㎡ 초과 225㎡ 이하: 1대 ○ 시설면적 225㎡ 초과: 1대에 225㎡를 초과 하는 15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 -225㎡)/150㎡}]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ul> <li>○ 골프장 : 1홀당 5대(홀의 수×5)</li> <li>○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li> <li>○ 옥외수영장 : 정원 22명당 1대(정원/22명)</li> <li>○ 관람장 : 정원 150명당 1대(정원/150명)</li> </ul>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525㎡당 1대(시설면적/525㎡)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600㎡당 1대(시설면적/600㎡)
9.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600㎡당 1대(시설면적/600㎡)
10.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450㎡당 1대(시설면적/450㎡)

비고 : 위 내용의 해석에 관해서는 영 제6조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따른다.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실 설>       제         보의       장         장       등         1       2         3       4         5       ②         1       1         1       1         2       2         2       2         2       2         3       2         4       2         5       2         2       3         4       4         5       2         2       4         4       4         5       2         2       4         4       4         5       2         2       4         4       4         5       2         6       4         7       4         8       4         9       4         1       4         1       4         2       4         3       4         4       4         5       2         6       4         7       4	116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의 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 의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 하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 사업 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의 존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의 존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의 조택지조성사업 의 지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때 설치하여야 할 노외주차장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의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 :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개선 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전체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나머지 면적으로 하되, 해당 사업 부지 면적의 1.2퍼센트 이상의 면적 이어야 한다. 2.「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 :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1.2퍼센트 이상의 면적

제22조(보조의 대상) ① 시장은 법 제2	제22조(보조의 대상) ①
1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주차	
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1. 기존의 건축물 중 담장 또는 대문을	1
<u>개조・철거하여</u>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공동주	
택의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주	
차장으로 용도변경하여 노외주차	설치
장 또는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려는	<u>하려는 자</u> <단서 삭제>
<u>자.</u> 단, 1면의 주차공간이 2.3m×	
5.0m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	-------

[별표 1]

## <u>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u>(제6조제1항 관련)

(노외주차장)

(단위 : 원)

급지 자동차 구분 구분	자동차	-1 - 4 - 1 - 2	최초 1시간	1일	월 정기주차권		
	최초1시간	초과 시 10분마다	최대요금	주 간	야 간	주•야간	
1급지	소형	무료	200	5,000	60,000	50,000	100,000
11日八	대형	무료	300	8,000	90,000	75,000	155,000
0ユョ)	소형	무료	100	3,500	40,000	30,000	60,000
2급지	대형	무료	200	5,000	70,000	50,000	110,000

※ 시설물 관리에 추가적 비용이 소요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시장이 따로 지정 고시한 주차장의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른 요금을 적용한다.

자동차 구분 10			1일 최대요금		
		10분마다	월~금요일 (공휴일 제외)	토.일 및 공휴일	
소	형	200원	5,000원	10,000원	
대	형	300원	8,000원	16,000원	

[별표 1]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6조제1항 관련)

(노외주차장)

(단위 : 원)

급지 7	급지 자동차 구분 구분 최초1시	-1 - 4 x1 -1	최초 1시간 초과 시 10분마다	1일 최대요금	월 정기주차권		
		최소]시간			주 간	야 간	주•야간
1급지	소형	무료	200	5,000	60,000	50,000	100,000
1 日 기	대형	무료	300	8,000	90,000	75,000	155,000
2급지	소형	무료	100	3,500	40,000	30,000	60,000
	대형	무료	200	5,000	70,000	50,000	110,000

- 1. 주차장의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거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지정 고시를 통하여 2시간 이내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 2.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12시부터 14시까지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 ※ 시설물 관리에 추가적 비용이 소요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시장이 따로 지정 고시한 주차장의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른 요금을 적용한다.

자도차		1일 최대요금		
자동차 구분	10분마다	월~금요일 (공휴일 제외)	토.일 및 공휴일	
소 형	200원	5,000원	10,000원	
대 형	300원	8,000원	16,000원	

### (노상주차장)

(단위 : 원)

급지 구분	자동차 구분	최초30분 이내	최초 30분 초과 시	1일 최대요금	월 정기주차권
1그기	소형	500	30분마다 500	5,000	60.000
1급지	대형	700	10분마다 300	8,000	해당없음
2급지	소형	300	10분마다 100	3,500	30.000
/   스타시	대형	500	10분마다 200	5,000	해당없음

※ 노상주차장의 경우 주차 시 1,000원을 징수한 후, 주차 완료 시 사용 시간에 따라 정산한다.

#### (비 고)

1.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1급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의 주거지역, 나목의 상업지역 및 제5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에 시장이 1급지로 지정고시한 지역

나. 2급지 : 1급지 이외의 지역

2.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3월 ~ 10월 : 08:00~20:00 나. 11월 ~ 2월 : 08:00~19:00

3. 차량의 구분

가. 소형 :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자동차

나. 대형 : 소형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

### (노상주차장)

(단위 : 원)

급지 구분	자동차 구분	최초30분 이내	30분 초과 시	1일 최대요금	월 정기주차권
1급지	소형	무료	30분마다 500	5,000	60.000
1月八	대형	무료	10분마다 300	8,000	해당없음
2급지	소형	무료	10분마다 100	3,500	30.000
	대형	무료	10분마다 200	5,000	해당없음

- 1. 노상주차장의 경우 주차 시 1,000원을 징수한 후, 주차 완료 시 사용 시간에 따라 정산한다.
- 2. 노상주차장 운영의 수익성·효율성을 분석하여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 (비 고)

1.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1급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의 주거지역, 나목의 상업지역 및 제5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에 시장이 1급지로 지정고시한 지역

나. 2급지 : 1급지 이외의 지역

2.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3월 ~ 10월 : 08:00~20:00 나. 11월 ~ 2월 : 08:00~19:00

3. 차량의 구분

가. 소형 :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자동차

나. 대형 : 소형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

[별표 6]

## 거주자시업지전용주치구획주차요금(제13조제3항 관련)

구 분	전 일 제	주 간 제	야 간 제
거 주 자	30,000/ 월	20,000/월	10,000/월
사업자 및 상근자	50,000/월	30,000/월	20,000/월

[별표 6]

## 거주자.사업지전용주치구획주차요금(제13조제3항 관련)

구 분	전 일 제	주 간 제	야 간 제
거 주 자	30,000/ 월	20,000/월	10,000/월
사업자 및 상근자	50,000/월	30,000/월	20,000/월

※ 거주자·사업자 전용주차구획 지정 운영과 관련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여 고시한 지역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할 수 있다.

#### [별표 10]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제17조 관련) 시 설 물 설치기준 1.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 ○ 시설면적 180㎡당 1대(시설면적 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 $/180m^{2}$ )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 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 종 근린생활시설 ○ 시설면적 120㎡당 1대(시설면적 2. 숙박시설 $/120m^2$ ) 주택의 규모별 주차장 설치기준 (전용면적) (대/㎡) 3.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 및 85㎡ 이하 1/85 「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 85㎡ 초과 1/70 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 위 표에 따른 주차대수 이상의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 주차대 텔 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다. ○ 세대당 주차대수가 0.9대(세대당 전 4.「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 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 에는 0.75대)이상 5.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 외한다), 발전시설 300m<sup>2</sup>)

[별표 10]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제17조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제1종 근린생활시설I「건축법 시행 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 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 종 근린생활시설	○ 시설면적 180㎡당 1대(시설면적 /180㎡)
2. 숙박시설	<ul><li>○ 시설면적 120㎡당 1대(시설면적 /120㎡)</li><li>○ 생활숙박시설은 100㎡당 1대 또는 호실 당 0.7대 중 큰 대수 적용</li></ul>
3.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 및 「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 텔	주택의 규모별 주차장 설치기준 (전용면적) (대/㎡) 85㎡ 이하 1/85 85㎡ 초과 1/70 ○ 위 표에 따른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 또는 호실(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당 주 차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 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	○ 세대당 주차대수가 0.9대(세대당 전 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에는 0.75대)이상
5.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 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 300㎡)

비고 : 위 내용의 해석에 관해서는 영 제6조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따른다.

도서지역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u>! 설치기준</u> (제17조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50	)㎡당 1대(시설면적/15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 ○ 시설면적 225 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 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5㎡당 1대(시설면적/225㎡)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 시설면적 300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 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당 1대(시설면적/300㎡)
○ 시설면적 22 초과하는 15	㎡ 초과 225㎡ 이하: 1대 25㎡ 초과: 1대에 225㎡를 0㎡당 1대를 더한 대쉬1+ 25㎡/150㎡]
<ul><li>○ 골프연습장 :</li><li>○ 옥외수영장 :</li></ul>	당 5대(홀의 수×5) 1타석당 1대(타석의수×1) 정원 22명당1대(정원/22명) 1 150명당 1대(정원/15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 〇 시설면적 525 전시설	im'당 1대(시설면적/525m²)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600	lm"당 1대(시설면적/600m")
9. 학생용 기숙사 이 시설면적 600	lm <sup>2</sup> 당 1대(시설면적/600m <sup>2</sup> )
10. 그 밖의 건축물 이 시설면적 450	)㎡당 1대(시설면적/450㎡)

[별표 11] 도서지역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7조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 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오여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 · 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225㎡당 1대(시설면적/225㎡)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 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75㎡ 초과 225㎡ 이하: 1대 ○ 시설면적 225㎡ 초과: 1대에 225㎡를 초과하는 150㎡당 1대를 더한 대쉬1+ {(시설면적-225㎡)/150㎡}]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ul> <li>○ 골프장 : 1홀당 5대(홀의 수×5)</li> <li>○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타석의수×1)</li> <li>○ 옥외수영장 : 정원 22명당1대(정원/22명)</li> <li>○ 관람장 : 정원 150명당 1대(정원/150명)</li> </ul>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525㎡당 1대(시설면적/525㎡)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600m'당 1대(시설면적/600m')						
9.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600㎡당 1대(시설면적/600㎡)						
10.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450㎡당 1대(시설면적/450㎡)						
비고 : 위 내용의 해석에 관해서는 영 제	l6조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따른다.						

# 2018년도 제5회 여수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8년도 제5회 여수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12월 27일

여수시인사위원회위원장

###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인원	근무 기간	담당직무내용	근무예정 부서
해양환경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1명	2년	- 해양환경 및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해양쓰레기 수거 일시시역인부 현장감독 및 관리 - 해양환경 오염행위 감시 등	어업생산과

○ 사업의 필요 및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3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총 5년)

### 2. 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3. 응시 자격조건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 거주지・성별: 제한없음
  - 연령 : 18세 이상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까지는 결격사유 해당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자격기준 : 다음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구 분	자격기준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기제 다급)	■ 관련 분야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법인(민간)단체 등에서 해양환경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4. 보수 및 복무

○ 보수수준

임용분야	연봉액	근무시간	비고
해양환경분야	36,626천원	주당 35시간	

- 연봉 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도 지급
- 복무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적용

### 5. 시험방법

- 제1차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심사
  - 서류전형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제2차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 적격성 심사

### 6. 시험일정

- 응시원서 교부·접수
  - 교부기간 : 2018. 12. 27. ~ 2019. 01. 07
    - ※ 응시원서 등 제출서식은 여수시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 접수기간: 2019. 01. 08. ~ 01. 10.(3일간) 09:00 ~ 18:00 ※휴일 제외
  - 접 수 처 : 여수시청 총무과(인사팀)
  - 접수방법 : 직접방문(대리접수 가능, 우편·택배·인터넷접수는 불가)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기	קוש		
면접시험 공고	일 시	장 소		
2019. 01. 15.(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 추후 별도 공고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합격자 발표 : 여수시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 및 개별 통지

### 7. 제출서류

- ① 응시원서 1부(반드시 자필로 작성) <별지 제1호 서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3.5cm×4.5cm) 1매(별도 제출)
  - 응시수수료: 여수시수입증지 7,000원(여수시청 민원실에서 인증)
- ②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③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A4용지 2매 이내. 경력 중심으로 작성
- ④ 직무수행 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⑥ 관련분야 자격(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 접수 시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야 하며 원본으로 확인된 것만 인정함

- ⑦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증명서에는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 전임 및 비전임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민간근무 경력의 경우 발행기관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를 함께 제출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
  -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불인정하며 회사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⑧ 관련분야 연구실적[요약서 및 실적자료]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⑨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행)
  - 경력으로 기재한 사업장에서의 보험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내역이 나와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⑩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⑪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단,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기재된 서류여야 함),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또한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함

### 8.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서류에 기재된 내용(학력,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 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함.
-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시험공고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험실 시일 7일전까지 여수시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공고함.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기재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포함)에는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함. 이 경우 기존 접수된 응시원서 등 제반 서류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서류전형 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을 경우에도 면접시험 실시함.
- 채용자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심사를 통하여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로 선발되더라도 결격사유조회, 신원조사,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 결과 등을 통해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채용분야 직무관련 문의처

분야	해당부서(담당팀)	문 의 처		
해양환경분야	어업생산과(생산팀)	061-659-3930		

▶ 그 밖의 채용관련 문의처 : 여수시청 총무과 인사팀 (☎ 061-659-3122)

<별지 제1호>

# 응 시 원 서(원본)

본인은 (2018년도 제5회 여수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8년 월 일

### 여수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응시번호							<b>د</b> د	명	(한글	<del>그</del> )	
응시직급 (응시분야)						′ ઇ	70	(한기	<b>사</b> )		
주민등록 번 호							_	복수 해당			
주 소	(⊕		)								여수시 수입증지
전자우편											붙이는 곳
전 화 (휴대전화)											

.....

## 응 세 표 (일반임기제공무원)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한글)			(한자)				
		20	)18년 월 '	<u>이</u>				
				_				
		여수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 ① 「※」표시가 되어있는 "응시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음
  - ② 응시직급: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주사, 보건주사보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 ③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④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⑤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 ⑥ 여수시수입증지란에는 응시분야 해당직급에 맞는 **여수시 수입증지**를 게첨 - 6·7급 7,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이 력 서

가. 공통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응시 분야		성 명					

나.	응시자격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경				
력				
- <del>-</del>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학				
위				

다.	다. 우대사항						
	자격증명	등록번호	취득일	시행기관			
자 격							
증							

위에 기지	배한 사	-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성	명 :	(인)	

### □ 학력

구 분	내 용					
	학교명	입학연도	졸업연도	전 공	학 위	
	최종학력부터 기재	00.00(년, 월)	00.00(년, 월)			
학력 및 전공						
	고등학교부터 기재					
논문, 저술,						
償 등						

## □ 주요경력

부터	까지	직장명	부서명/직위	담당 업무
최종경력부터 기재	00.00(년, 월)			구체적 담당업무 또는 프로젝트 기재

## □ 기술 및 자격

구 분	내	용
자격증	종 류	등록번호 / 취득일
(업무관련)		
	종 류	점수 또는 수준 / 취득일
어학		
기타 보유 자격		
또는 기술		

#### <별지 제3호>

# 자 기 소 개 서

□ 응시자 인적사항			
○ 응시분야:	분야	직급	
○ 성 명:			
○ 생년월일:			
□ 자기소개서			
	2018년 월	일	
		작성자 〇	○ ○ (서명)

###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성장과정, 경력과 근무·연구활동 및 업** 적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 분량은 A4용지 5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수상실적			
수상일자	내용(훈격)	수여기관	비고
□ 하이노ㅁ 기제	/=!! [[t] []   <b>T</b> [ <b>M</b> ]		
□ 학위논문 기재 가. 석사논문	(애당자인 걱정)		
○ 학위수여일자:			
○ 논 문 제 목:			
○ 내 용 요 지(10줄	를 이내 간략히 설명)		
<b>나. 박사논문</b> ○ 학위수여일자:			
○ 논 문 제 목:			
	줄 이내 간략히 설명)		

## 다. 그 밖의 논문, 저술 등 연구개발 실적

제 목	게재서 (출판사)	연구자	연 구 연월일	내용요지

#### <별지 제4호>

# 직무수행 계획서

	응시자 인	적사항					
0	응시분야:		분야	직급			
0	성 명:						
0	생년월일: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 〈 작성요령 〉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응모분야에 대한 자신의 생각, 직무수행 방향, 향후계획, 발전방안, 활동계획 등을 우리 도 입장에서 자유롭게 기술
- 분량은 A4용지 10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별지 제5호>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여수시는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 및 심사자료 확인
-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학력·경력·자격사항 등 채용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심사기간에만 보유, 이용 후 보관됩니다.
-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 제한, 채용심사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18년 월 일

성명: (서명)

※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 후 제출바랍니다.